부산광역시 기장군 대한노인회 기장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1.11.24] (제정) 2021.11.24 조례 제1237호

> 관리책임부서명 : 노인장애인복지과 관리책임전화번호 : 709-4354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기장군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원내용) 기장군수(이하"군수"라 한다)는 대한노인회 기장군지회(이하"지회"라 한다)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3조(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)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「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공유 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.

제4조(지원대상) 군수는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- 1. 지회의 조직·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
- 2. 노인교실, 읍·면 분회 및 경로당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
- 3.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
- 4. 노인 자원봉사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
- 5.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(노인일자리)에 관한 사항
- 6.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
- 7.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
- 8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지원절차 등) ① 지회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- 1. 사업계획서
- 2.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
- 3.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
-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·통보하여야 한다.
- 1.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
- 2.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
- 3.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
- 4.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

제6조(중복지원의 금지) ①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 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는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중단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.

제7조(지도·감독 등) ① 군수는 지회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무에 관하여 지도·감독 할 수 있다.

-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·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사무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.
-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8조(포상) ① 군수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항은 「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9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부칙 <조례 제1237호, 제정 2021.11.24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